

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개정법률안 요약

개정배경

- 현재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한 소프트웨어 업체의 자금 및 보증지원을 위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, 정부의 지원에 의한 운영에는 한계가 있어
- 민간기업의 참여확대를 통하여 적정한 공제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간의 출자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수행하도록 함

개정내용

□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설립근거 마련

- 현재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(시행일 : '97. 7. 1)
 - 협회는 사단법인적 성격으로 회비로 사업함을 원칙으로 하며, 민간의 출자시 지분권 인정 또는 지분양도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출연만 가능하므로 민간의 공제사업 참여에 저해요인으로 작용(민법 제49조, 제56조)
 - * SW관련 대기업의 경우 출자를 통한 공제가입을 희망

- 따라서 민간의 출자가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함(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)
 - * 현재('97. 6. 28) 조성된 민간재원 43.4억원 중 출자금(향후 법개정시 공제조합의 출자금으로 전환)이 37.7억원, 가입금 및 부금이 5.7억원 이며 출연금은 100만원에 불과함
 - * 유사입법사례 :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(공제조합의 설립),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(주택공제조합의 설립),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2(전기통신공제조합의 설립),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3조(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설립) 등

□ 공제조합의 사업내용 명시

- 현행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서는 소프트웨어진흥사업으로 채무보증사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공제사업의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,
- 공제조합의 설립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사업 중 관련사항을 삭제하고(제12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) 자금대여 및 투자, 채무보증, 이행보증 등 기본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제조합의 사업으로 법에서 규정하여 사업내용을 명확히 함(안 제13조의4)

□ 공제조합의 운영재원 규정

- 민법상의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형태이므로 (민법 제703조)
- 영세한 업체의 부금가입과 대기업의 출자참여가 선택적으로 가능하도록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금, 출연금, 공제부금 또는 예탁금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
 -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의5)
 - * 이행보증사업 위주의 공제조합은 민간 출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나, 자금 대여를 위한 중소기업 공제사업과 채무보증을 위한 기술신용보증기금등은 정부의 출연으로 운영되고 있음

□ 공제규정의 근거 신설

- 현행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서는 공제사업의 수행기관과 공제규정등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,
- 공제조합의 설립에 따라 공제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법에서 규정하여 명확히 함(안 제13조의6)
 - 정부규제는 최소화 하고,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최소한의 공제규정을 마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
 - * 유사입법사례 : 건설산업기본법 제57조(공제규정),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6조(공제규정)등

□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근거 신설

- 공제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손실

발생에 대비한 손실보전준비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의7)

- 향후 손비인정공과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재경원과 협의추진
- * 유사입법사례 :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7의7(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)
- *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(공과금의 범위) 43.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가 동 기금에 납부하는 대손보전준비금과 출연금

□ 지분양도의 근거등 신설

- 민법상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규정하고 있어 합유자 전원의 동의없이 지분처분이 불가능하여(민법 제704조 및 제273조)
- 민간이 출자한 지분을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, 공제조합의 지분취득이 가능하도록 함(안 제13조의9 및 제13조의10)
- * 유사입법사례 : 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, 제60조

□ 임원의 책임규정

- 정부의 출연금과 민간자본의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(안 제13조의11)
- * 유사입법사례 :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 법률 제48조, 신용보증기금법 제44조